

## 신탁계약서 전후 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1. 2.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&lt;신설&gt;</p>	<p>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1. 2.(현행과 같음)  <b>3. 환매조건부 매수</b></p>
<p><b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1. 2.(생략)</p>	<p><b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<b>다만, 법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b>                      1. 2.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1.~4.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&lt;신설&gt;                       &lt;신설&gt;                       ③·④(생략)</p>	<p><b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1.~4.(현행과 같음)  <b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b>  <b>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</b>  <b>④·⑤(호번변경)</b>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부칙</b>                     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</p>